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-11호

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의 제정과 개·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의 제정과 개·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6년 1월 8일

서초구청장

□ 조례의 제정과 개·폐 청구를 위한 연서대상 주민 수

(단위: 명)

조례의 제정과 개·폐 청구권자 총수 ($A=a+b$)	18세이상 주민으로 청구권이 있는 주민 수 (a)	18세 이상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(b)	연서서명 주민수 $A \times 1/70$
351,481	351,011	470	5,022

※ 기준일자 : 2025. 12. 31.

※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 없는 자 제외